

(별첨 1)

1. 改定 理由

1990.12.31 戶籍法과 同法 施行規則이 改定되고 同法施行令이 廢止됨에 따라 서울特別市永登浦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를 改定하려는것임.

2. 主要 內容

가. 改定된 戶籍法 第130條(申告의 義務가 있는자가 正當한 事由없이 期間內에 하여야 할 申告 또는 申請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以下의 過怠料에 처한다)의 規定에 의거 서울特別市永登浦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의 過怠料 賦課金額을 2만원 以下에서 5만원 以下로 變更

나. 改定된 戶籍法 第131條(申告를 懈怠한자에 대하여 期間을 정하고 申告 또는 申請의 最高를 한 境遇에 正當한 理由없이 그期間內에 申告 또는 申請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만원 以下의 過怠料에 처한다)의 規定에 의거 서울特別市永登浦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의 過怠料賦課金額을 4만원 以下에서 10만원 以下로 變更

다. 改定된 戶籍法 맞추어 現行과 過怠料 賦課 對象 35個項目을 削除하고 1個項目을 他項目에 包含 總 30個項目을 改定

(削除項目)

- 6項 “遺言에 의한 入養申告”
- 23項 “胎兒의 戶主 相續申告”
- 24項 “戶主의 變更申告”
- 25項 “胎兒의 死産申告”

(包含項目)

- 11項 “婚姻無效申告”를
- 30項 “判決에 의한 戶籍訂正申告”

에 包含

라. 過怠料賦課 基準의 懈怠期間 區分中 現行 “3個月未滿”을 “1月未滿과” “1月以上-3月未滿”으로 細分 단기간 懈怠者에 대하여 過怠料 負擔을 輕減

3. 改定 根據

- 戶籍法 第130條, 第31條, 제132條의2
- 戶籍法 第43條

서울特別市永登浦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改定條例(案)

서울特別市永登浦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를 다음과 같이 改定한다.

서울特別市永登浦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

제1조(목적) 이 條例는 戶籍法(以下“法”이라 한다)第132條의 2 및 戶籍法 施行規則(以下“規則”이라 한다)第52條의 規定에 의하여 戶籍申告 또는 申請의 懈怠에 대한 過怠料의 賦課徵收에 關하여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納付義務者) 過怠料 納付義務者는 申告 또는 申請 (以下“申告”라 한다) 義務者 또는 申告者로 한다.

제3조(賦課對象) 過怠料賦課對象은 別표1과 같다.

제4조(賦課基準 및 免除) ① 區廳長은 過怠料의 金額을 정함에 있어서 懈怠期間, 申告義務者의 學歷, 生活程度, 懈怠理由, 懈怠地域 等を 參照하여야 하며, 過怠料 賦課基準은 別표2와 같다.

②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境遇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를 賦課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生活保護法 第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生活保護對象者

2. 移民, 留學, 就業 等に 의한 外國居住 및 天災地變 等으로 法定期間內 申告를 하지 못한 자.

3. 其他 區廳長이 移民, 留學, 就業 等に 의한 外國居住 및 天災地變 等으로 法定期間內 申告를 하지 못한 자.

제5조(賦課等) ① 區廳長은 申告를 懈怠한 者로부터 申告를 接受하는 때에는 別지 第1號書式의 懈怠理由書의 申告書에 添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申告人이 懈怠理由書의 提出을 거부할 때에는 그 事由를 記錄하고 職權으로 作成한다.

② 區廳長은 過怠料를 賦課하는 때에는 納期開始 5日以前에 別지 第2號書式의 納付通知書와 規則 第39號 書式의 過怠料納付通知를 納付義務者에게 發付하여야 한다.

③ 過怠料의 納付期限은 納付通知書を 發付한 날로부터 15日以內로 한다.

④ 區廳長은 過怠料의 賦課徵收에 關한 제반 處理事項을 別지 第3號書式의 過怠料決定資料簿와 規則 第51號 書式의 過怠料徵收簿에 記錄 管理하여야 한다.

⑤ 區廳長은 過怠料의 賦課徵收가 違法 또는 不當한 것임을 確認한 때에는 即時 그 處分을 變更하거나 取消하여야 하며 이를 別지 第4號書式의 過怠料 賦課取消(變更) 通知書を 納付義務者에게 發付하여야 한다.

제6조(事前徵收) 區廳長은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納付義務者 懈怠理由書提出과 同時에 過怠料를 自진 納付하는 境遇와 申告者의 居住地가 接受機關의 管轄區域이 아닐 境遇에는 過怠料를 事前 徵收할 수 있다.

제7조(納付督促) 區廳長은 過怠料納付義務者가 法 第132條의 2 第2項 및 規則 第52條 第7項의 規定에 의한 異意申請을 하지 아니하고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納付期限內에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納付期限이 經過한 날부터 15日以內(銀行納入인 境遇에는 20日以內)에 10日以內의 納付期限을 定하여 別지 第5號 書式의 督促通知書を 發付해여야 한다.

제8조(滯納處分) 區廳長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納付의 督促을 받은 者가 그 納付期限까지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 第132條의 2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滯納처분 하여야 한다.

제9조(準用規定) 過怠料의 徵收에 關하여 條例에 定한것을 除外하고는 地方歲 徵收의 例에 의한다.

제10조(施行細則) 이 條例의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區의 規則으로 定한다.

부 칙

이 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별표1)

과태료부과대상(제3조 관련)

| 부 과 대 상 | 근거법령 | 과 태 료 금 액 | |
|---|------------------|------------------|------------------|
| | | 법 제130조 해당 경우 | 법 제131조 해당 경우 |
| 1. 출생일부터 1월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출생신고) | 법 제49조 법 제51조 | 5 만원 | 10만원 |
| 2. 기아를 찾은날부터 1월이내에 출생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호적정정신청) | 법 제58조 | 5 만원 | 10만원 |
| 3.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이내에 인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재판에 의한 인지신고) | 법 제63조 | 5 만원 | 10만원 |
| 4. 유언집행자 취임일부터 1월이내에 인 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유언에 의한 인지신고) | 법 제64조 | 5 만원 | 10만원 |
| 5. 사산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사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인지태아의 사산신고) | 법 제65조 | 5 만원 | 10만원 |
| 6.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이내에 입양취 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입양취소신고) | 법 제71조 | 5 만원 | 10만원 |
| 7.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이내에 파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재판에 의한 파양신고) | 법 제75조 | 5 만원 | 10만원 |
| 8. 재판의 확정일 부터 1월이내에 혼인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재판에 의한 혼인 신고) | 법 제76조 의2 | 5 만원 | 10만원 |
| 9.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이내에 혼인취소 신고를 아니한 자(혼인 취소신고) | 법 제78조 | 5 만원 | 10만원 |
| 10.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이내에 이혼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재판에 의한 이혼 신고) | 법 제81조 | 5 만원 | 10만원 |
| 11. 부모가 미성년의 자에 대한 친권을 행 사할 자를 정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친권자 지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부모의 친권자 변동 신고) | 법 제82조 제1항 | 5 만원 | 10만원 |
| 12.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이내에 친권이나 관리권의 상실, 사퇴, 회복, 지정,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친권 또는 관 리권의 상실, 사퇴, 회복, 지정, 변 경에 따른 친권자 변동신고) | 법 제82조 제2항 | 5 만원 | 10만원 |
| 13. 후견임취임일부터 1월이내에 후견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후견개시신고) | 법 제83조 | 5 만원 | 10만원 |
| 14. 후임자취임일부터 1월이내에 후견인 경 질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후견인 경질 신고) | 법 제84조 | 5 만원 | 10만원 |
| 15. 후견종료일부터 1월이내에 후견종료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후견 종료 신고) | 법 제86조 | 5 만원 | 10만원 |

| 부 과 대 상 | 근거법령 | 과 태 료 금 액 | |
|---|------------|-------------------|-------------------|
| | | 법 제130조 해당인 경우 | 법 제131조 해당인 경우 |
| 16. 사망의 사실을 안 날(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사망신고) | 법 제87조 | 5 만원 | 10만원 |
| 17. 사망자를 인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본적 불명자, 인식불능자의 사망) | 법 제93조 | 5 만원 | 10만원 |
| 18. 재판확정일부터 1월이내에 실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실종선고신고) | 법 제95조 | 5 만원 | 10만원 |
| 19. 호주승계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호주 승계신고) | 법 제96조 | 5 만원 | 10만원 |
| 20. 호주승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승계의 사실을 안 날부터 3월이내에 신고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자(승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호주승계신고) | 법 제96조 제3항 | 5 만원 | 10만원 |
| 21.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이내에 호주승계회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호주승계회복신고) | 법 제100조 | 5 만원 | 10만원 |
| 22. 폐가 또는 무후가가 된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일가창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일가창립의 신고) | 법 제106조 | 5 만원 | 10만원 |
| 23. 국적법 제11조에 의한 고시일부터 1월이내에 귀화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귀화신고) | 법 제109조 | 5 만원 | 10만원 |
| 24. 국적상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국적상실신고) | 법 제110조 | 5 만원 | 10만원 |
| 25. 법무부장관의 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국적회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국적회복신고) | 법 제112조 | 5 만원 | 10만원 |
| 26.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개명신고) | 법 제113조 | 5 만원 | 10만원 |
| 27.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취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취적신고) | 법 제116조 | 5 만원 | 10만원 |
| 28.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월이내에 취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판결에 의한 취적신고) | 법 제119조 | 5 만원 | 10만원 |
| 29. 호적정정허가 재판이 있었을 때 1월이내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허가의 호적정정신청) | 법 제122조 | 5 만원 | 10만원 |
| 30.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월이내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신청) | 법 제123조 | 5 만원 | 10만원 |

(별표2)

과태료부과기준(제4조 제1항 관련)

| 부 과 기 준 | | 부 과 율 | 부 과 금 액 | |
|-------------------|---------------|-----------|----------|----------|
| 구 분 | 세부기준 | | 법제130조해당 | 법제131조해당 |
| 계 | | 100분의 100 | 50,000원 | 100,000원 |
| 해태기간 | 비 중 | 100분의 40 | 20,000원 | 40,000원 |
| | • 1월미만 | 100분의 5 | 2,500원 | 5,000원 |
| | • 1월이상 3월 미만 | 100분의 10 | 5,000원 | 10,000원 |
| | • 3월이상 6월 미만 | 100분의 20 | 10,000원 | 20,000원 |
| | • 6월이상 12월 미만 | 100분의 40 | 20,000원 | 40,000원 |
| 해태지역 | 비 중 | 100분의 20 | 10,000원 | 20,000원 |
| | • 군 | 100분의 5 | 2,500원 | 5,000원 |
| | • 시 | 100분의 10 | 5,000원 | 10,000원 |
| | • 구(특별시·직할시) | 100분의 20 | 10,000원 | 20,000원 |
| 해태사유 | 비 중 | 100분의 10 | 5,000원 | 10,000원 |
| | • 무 지 | 100분의 5 | 2,500원 | 5,000원 |
| | • 과 실 | 100분의 10 | 5,000원 | 10,000원 |
| 신고의무자의 학 력 | 비 중 | 100분의 20 | 10,000원 | 20,000원 |
| | • 국졸이하 | 100분의 5 | 2,500원 | 5,000원 |
| | • 중·고졸 | 100분의 10 | 5,000원 | 10,000원 |
| | • 전문대졸이상 | 100분의 20 | 10,000원 | 20,000원 |
| 신고의무자의 생 활 정 도 | 비 중 | 100분의 10 | 5,000원 | 10,000원 |
| | • 비과세대상 | 100분의 5 | 2,500원 | 5,000원 |
| | • 과세대상 | 100분의 10 | 5,000원 | 10,000원 |

해태기간이 12월이상인 경우 법제 130조 해당시는 50,000원, 법 제131조 해당시는 100,000원

(별지 제1호 서식)

해 태 이 유 서

1. 신고 (또는 신청) 의무자

성명 (남·여)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학력 (국졸이하, 중·고졸, 초대졸이상)

2. 사건본인의 인적사항

성명 (남·여) 주민등록번호

신고(또는 신청) 의무자와의 관계

3. 사건발생 상황

사건의표시 :

사건발생년월일 : 년 월 일

사건신고년월일 : 년 월 일

해태기간(1개월미만. 1개월이상-3개월미만.

3개월이상-6개월미만. 6개월이상-1년미만)

4. 해태이유(무지·과실)

5. 신고의무자 생활정도 : (과세대상·비과세대상)

년 월 일

진술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남부통지서

| | | |
|--|---|-------|
| 제 호 | 년도 일반회계 | |
| 남부 자 | 주소 | |
| | 성명 | |
| 세입과목 | (관) | (항) |
| |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목) 과태료 (호적과태료) | |
| 해태사항 | | |
| 금 액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
| 납입장소 | 시내각은행본점·지점· 예금취급소·농협·수협· ○○번창구·전국우체국 (한은·산은제외) | |
| 위의 금액은 호적법 제132조의 2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수입일부인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 |

80mm×160mm
(신문용지 54g/m²)

영수필통지서(1)

| | | |
|--------------------------------------|-----------------------------------|-------|
| 제 호 | 년도 일반회계 | |
| 남부 자 | 주소 | |
| | 성명 | |
| 세입과목 | (관) | (항) |
| |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목) 과태료 (호적과태료) | |
| 해태사항 | | |
| 금 액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수입일부인 |
| ○○은행 ○○지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징구관 귀하 | | |

80mm×160mm
(신문용지 54g/m²)

영수필통지서(2)

| | | |
|-------------------------------------|-----------------------------------|-------|
| 제 호 | 년도 일반회계 | |
| 남부 자 | 주소 | |
| | 성명 | |
| 세입과목 | (관) | (항) |
| |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목) 과태료 (호적과태료) | |
| 해태사항 | | |
| 금 액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수입일부인 |
| ○○은행 ○○지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 귀하 | | |

80mm×160mm
(신문용지 54g/m²)

영 수 증

| | | |
|---------------|-----------------------------------|-------|
| 제 호 | 년도 일반회계 | |
| 남부 자 | 주소 | |
| | 성명 | |
| 세입과목 | (관) | (항) |
| |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목) 과태료 (호적과태료) | |
| 해태사항 | | |
| 금 액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 | 수입일부인 |
| ○○은행 ○○지점 | | |

80mm×160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3호 서식)

과 태 료 결 정 자 료 부

| 신고또는 신청 의무자 ① | | ② | 과 태 료 부 과 비 율 | | | | | 해태기간 | 비 고 |
|---------------|-----|------|-----------------|-----|------|------|-------|--------|------|
| | | | 해 태 기 간 1 년 미 만 | | | | | | |
| 주 소 | 성 명 | 위반조항 | 과태료액 ③ | ④ | ⑤ | ⑥ 신고 | ⑦ | ⑧ 신고의무 | |
| | | | | 비율계 | 해태기간 | 해태지역 | 의무자학력 | | 해태이유 |
| | | | | | | | | | 1년이상 |

268mm×190mm
(인쇄용지 (2급) 60g/m²)

● 작 성 요 령

- ① 위반조항은 호적법 제 130조 또는 제131조와 별표1의 근거법령안 해당조문을 기입
- ② 과태료액은 조례 제4조에 의한 산정금액 기입
- ③ 비율계는 ④~⑧의 합계
- ④ 해태기간은 1개월미만, 1개월이상,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개월이상 1년미만으로 구분
- ⑤ 해태지역은 군, 시, 직할시로 구분(신고의무자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함)
- ⑥ 신고의무자 학력은 국졸이하, 중·고졸, 전문대졸이상으로 구분
- ⑦ 해태사유는 무지, 과실로 구분
- ⑧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 과세대상으로 구분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 고 지 금 액 | 취소(변경)액 | 차 액 | 비 고 |
|---------|---------|-----|-----|
| | | | |

취소(변경) 사유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190mm×268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5호 서식>

납부통지서

| | | |
|--|---|-------|
| 제 호 | 년도 일반회계 | |
| 납부자 | 주소 | |
| | 성명 | |
| 세입과목 | (관) (항) 임시적세의수입 잡수입 (목) 과태료 (호적과태료) | |
| 해태사항 | | |
| 금 액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
| 납입장소 | 시내각은행본점·지점· 예금취급소·동협·수협· ○○번창구·전국우체국 (한은·산은제외) | |
| 위의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 | |
| 수입일부인 | | 수입일부인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 |

80mm×160mm
(신문용지 54g/m²)

영수필통지서 (1)

| | | |
|---|--|-------|
| 제 호 | 년도 일반회계 | |
| 납부자 | 주소 | |
| | 성명 | |
| 세입과목 | (관) (항) 임시적세의수입 잡수입 (목) 과태료 (호적과태료) | |
| 해태사항 | | |
| 금 액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수입일부인 | | 수입일부인 |
| ○○은행 ○○지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징구관 귀하 | | |

80mm×160mm
(신문용지 54g/m²)

영수필통지서 (2)

| | | |
|--|--|-------|
| 제 호 | 년도 일반회계 | |
| 납부자 | 주소 | |
| | 성명 | |
| 세입과목 | (관) (항) 임시적세의수입 잡수입 (목) 과태료 (호적과태료) | |
| 해태사항 | | |
| 금 액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수입일부인 | | 수입일부인 |
| ○○은행 ○○지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 귀하 | | |

80mm×160mm
(신문용지 54g/m²)

영 수 증

| | | |
|---------------|--|-------|
| 제 호 | 년도 일반회계 | |
| 납부자 | 주소 | |
| | 성명 | |
| 세입과목 | (관) (항) 임시적세의수입 잡수입 (목) 과태료 (호적과태료) | |
| 해태사항 | | |
| 금 액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수입일부인 | | 수입일부인 |
| ○○은행 ○○지점 | | |

80mm×160mm
(신문용지 54g/m²)